



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

- 한국 vs. G5 -

SUMMARY

한국 법인세제 G5 수준으로 개선하여, 기업 조세경쟁력 확보 필요

법인세 주요 제도 비교

제도	한국	G5
R&D 세액공제율¹⁾ (대기업 기준)	최대 2%	평균 17.6%
결손금 이월공제²⁾	소득의 60% 한도, 최대 15년간만 이월 가능	소득의 50~80% 한도, 무기한 이월 가능(일본 제외)
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³⁾ 조정 제도	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국내 과세시, 해외자회사의 현지 납부 법인세 공제	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비과세
사내유보금⁴⁾ 과세	有(서울 20%)	미국·일본만 有(서울 美 20%, 日 10~20%)
최저한세 제도⁵⁾	有	無(미국 제외)

* 주 1) 기업의 연구·개발(R&D)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그 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
 2) 기업에 발생한 손실(결손)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그 해 과세할 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
 3) 1차 과세: 해외자회사는 발생 소득에 대해 해외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 + 2차 과세: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 → 동일한 소득 원천에 대해 해외·국내에서 세금 두 번 납부
 4) 기업이 세금까지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(ex. 투자, 배당 등)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
 5)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
 *자료: OECD, PWC(Worldwide Tax Summaries) 등

기업규모별 R&D
세제지원 차별 과도

① R&D 세액공제 제도

기업 연구·개발(R&D) 비용의 일정액을 그 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

❖ G5 대비 한국 대기업 R&D 세액공제율 저조

* 대기업 R&D 세액공제율: 한국 최대 2% vs. G5 평균 17.6%

R&D 세액공제율^{주1)} 비교(2021년 기준)

대기업	최대 2%	최대 10%	최대 10%	13%	30%	25% ^{주3)}
중소기업	25%		12%	24.7% ^{주2)}		

* 주 1) 당기 R&D 투자분 공제율이며, 특정 기술 공제율 우대, 한시적 공제율 상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일반 세액공제율
 2) 영국은 중소기업 R&D에 대해 소득공제로 R&D를 지원 →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세액공제율로 환산
 3) 독일은 R&D 수행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허용
 *자료: OECD R&D Tax Incentive 2021

? 왜 문제인가?

민간 R&D를 견인^{주1)}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수준 미흡
 → 대기업의 R&D 유인을 위축시켜 민간 R&D 둔화로 이어질 우려

* 주: 대기업 R&D는 민간 전체 R&D의 61.4% 차지(2020년 기준, KISTEP)

상대적으로 미흡한
지원수준으로 대기업
R&D 경쟁력 저하

손실 이월공제 한도와
기간이 모두 제한적

②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

💡 기업에 발생한 손실(결손)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

- ❖ 한국은 대기업에만 결손금 공제한도 제한, 공제 기간도 한정
- ❖ G5는 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, 무기한 공제를 허용(일본 제외)

결손금 이월공제 제도(2022년 현재)

공제 한도 (소득의 일정비율)	대기업	60%	80%	50%	5백만£ + 5백만£를 초과하는 소득의 50%	1백만€ + 1백만€를 초과하는 소득의 50%	1백만€ + 1백만€를 초과하는 소득의 60%
	중소기업	100%		100%			
공제 가능 기간		15년	무기한	10년	무기한		

*자료: PWC Worldwide Tax Summaries

? 왜 문제인가?

- ✅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취지는 손실 발생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
→ 기업규모 차별할 이유 無
- ✅ 공제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제 한도까지 제한
→ 한 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기한 내 전부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

기업의 신속한 경영
정상화에 걸림돌

해외로부터 받은 배당에
과세하는 '거주주의'
나홀로 유지

③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

★ 해외자회사는 발생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 납부 → 해당소득을 재원으로 국내 모회사에 배당 → 배당금 국내 과세 시, 동일한 소득 원천에 해외·국내 두 번 과세 → 이중과세 조정 필요

- ❖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G5는 비과세하는 반면, 한국만 과세

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방식(2022년 현재)

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국내 과세시, 해외자회사의 현지 납부 법인세 공제	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비과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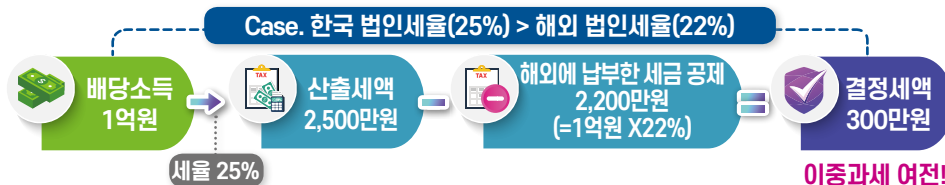
*자료: PWC Worldwide Tax Summaries

? 왜 문제인가?

- ✅ 현재 우리나라 방식으로는 국내외 세율차이에 따라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 발생

<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국내 과세 시뮬레이션 >

※가정: 해외자회사는 발생한 소득(1억원) 전부를 국내 모기업에 배당한다고 가정



- ✅ 이중과세 부담에 해외자회사 소득이 국내로 배당되지 않고 현지 유보
→ 해외소득 국내 재투자 기회와 달러 유입에 따른 환율 안정화 기회 상실

불완전한 이중과세
조정으로 해외 소득
현지 유보 유인이 높음

주요국 중 기업의 사내 유보에 대한 세부담 가장 높아

4 사내유보금^주 과세 제도

*주: 기업이 세금까지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(ex. 투자, 배당 등)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
 ❖ G5(일본 제외)는 사내유보금에 비과세하거나 조건부 과세 vs. 한국은 예외 없이 과세

사내유보금 과세 여부 및 세율(2022년 현재)

과세 여부	○	△ ^주	○	X		
세율	20% (단일세율)	20% (단일세율)	과세표준별 10~20% (누진과세)	-		

*주: 미국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정상적 기업 활동 위한 사내유보 필요성 입증 시 비과세
 *자료: PWC Worldwide Tax Summaries

? 왜 문제인가?

✔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에 추가 과세
 → 이종과세 문제 발생

기업 이종과세 부담 과중

최저한세 부과로 기업 공제·감면 실효성 저하

5 최저한세 제도

기업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

* 기업이 각종 세금공제·감면 혜택을 받은 후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일정 한도에 미달할 경우,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·감면 배제

❖ 주요국(G5 및 한국) 중 한국·미국만 최저한세 부과
 * 단, 미국은 규모가 큰 일부 기업에만 부과 vs. 한국은 모든 기업에 부과

최저한세 부과 여부(2022년 현재)

부과 여부	○	○ ^주	X			
대상	모든 기업	최근 3년 평균 순이익 10억달러 초과 기업	-			

*주: 미국은 2023년부터 최저한세 부과 예정
 *자료: PWC Worldwide Tax Summaries

? 왜 문제인가?

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세금공제(ex.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, 고용증대 세액공제)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 만큼은 세금 납부 의무 발생
 →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나는 한편,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관련 세제지원 효과 반감

기업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 및 투자·고용 유인 위축 우려

쟁점과 체크 포인트

- ✔ 과도한 기업규모별 R&D 세제지원 차별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 등 불합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
- 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, 우리 기업들이 고물가·고금리의 복합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력 조성 필요
 * "법인세제 개선은 기업의 R&D와 자본 투자를 촉진시켜, 국가 GDP와 생산성의 '크고(Large)', '지속적(Persistent)' 인 증대를 가져온다" (전미경제연구소, '22.7월)

